

# 도화동·용강동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2011. 7. 1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6월 10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11년 7월 1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과장 이 명 성

### 가. 개정이유

동 의견청취안은 도화·용강 상점가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전통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형쇼핑몰,  
문화공간이 존재하는 영등포, 신촌 등으로 수요층이 이동함으로써  
영업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집객력있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나.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지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위 치	도화동 179-1번지, 용강동 40-5번지 일대
면 적	대지 ; 329,000㎡, 건물 : 197,400㎡ 영업장면적 :59,220㎡ (점포수 :620개)
상 점 가 명	도화 상점가, 용강 상점가
용 도 지 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3종일반주거지역
사 업 기 간	2011년 ~ 2014년
사업시행자	마포구, 상권활성화 관리기구

### 2. 사업내용

#### 1) 상권활성화사업

가) 목 표 : 2011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타운매니저가 주도하여 상인회, 마포구와 협력을 통하여 단기간 사업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상권관리기구의 자생력을 통하여 지속발전 할 수 있는 기반마련

나) 추진주체 : 타운매니저의 주도 하에 상권활성화 구역 내 도화·용강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상권활성화기구 (비영리 사단법인)설립

#### 2) 세부프로그램

가) 경영현대화 사업 : 21억5천만원

(1) 브랜드개발(마포갈비, 주물럭), 커뮤니티공간 무대설치,

이벤트행사, 먹거리 축제 지원 등

나) 시설현대화 사업 : 66억2,400만원

(1) 상점가 상징간판, 경관조명, 전선지중화, 복사골 만남의 광장 조성  
복사골 미디어 장치 부착, 디자인거리 조성

(2)·타운매니저 인건비 : 3억원(3년 인건비)

3. 소요 예산 : 총 90억7,400만원

1) 국 비 : 64억2,400만원

2) 시 비 : 15억9,000만원

3) 구 비 : 9억 5,500만원

4) 민 자 : 1억500만원

4. 추진 개요

1) 2011. 3. 24 : 중소기업청 공고

2) 2011. 4. 28 :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신청(구 → 서울시 → 중기청)

3) 2011. 5. 16 : 중기청 평가단 심의

4) 2011. 5. 25 :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5. 향후 추진계획

1) 2011. 6월 : 2012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반영

2) 2011. 7월 : 세부추진사업계획 수정. 보완(중기청 협의)

3) 2011. 8월 : 도화·용강동 상점가 상권관리기구 설립 및  
타운매니저 선정

4) 2011. 9월 : 전액국비로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지하철 5호선, 6호선과 경의선 및 공항철도 환승역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특히 지하철 공덕역과 마포역 사이에 유동인구가 많아 유명 먹거리의 브랜드지역으로 상권의 잠재력이 높으나 마포로 버스중앙차선제 도입 등으로 교통체계가 혼잡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문화시설이 없어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에 따른 다양한 문화공간 확보와 먹거리의 브랜드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공덕5거리 주변에 대형마트가 입점예정으로 신축상가와 경쟁력이 불가피하여 상점가의 자생력을 살릴 수 있는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통한 관광문화특화거리조성, 상설 상권관리 기구의 운영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사업인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역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 상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사업시행, 둘째, 차질 없는 예산의 확보와 행정적 지원을 위한 한시적 마포구 상권 활성화 사업 전담 팀 신설 또는 기존 팀의 보강, 셋째, 상인, 상권관리기구, 지자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상권 관리기구 신설과 운영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이사장 및 타운매니저 선정 등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완료 후에도 상권 관리 기구의 운영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창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상설 자립형 기구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무엇보다도 본 사업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행정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채택**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